존경하는 白昌鉉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第69回 臨時會 第1次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都市計劃 用途地區 및 都市計劃 施設決定 또는 變更案의 議會 意見聽取件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都市計劃 用途地區 指定과 施設決定은 議員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市民生活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都市計劃事業이며, 또한 事業施行에도 많은 豫算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全 議員님들의 중요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이러한 重要性을 깊이 認識하면서 모든 都市計劃 用途地區 指定이나 施設決定하는 市民의 代表者의 立場에서 地域區 議員님들의 意見도 듣고, 執行部의 충분한 質疑와 答辯을 들었으며, 現場 踏査가 필요한 地域은 當 委員會所屬 委員들이 일일이 現場을 확인하고, 隣近 住民과 各界 意見을 收斂하는 등 深度 있는 審査를 하였습니다.

우리 委員會에 繫留된 議會 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는 지난 會期에 保留된 4件과 當 會期에 새로 接受된 1件을 합쳐 總 5件을 審査한 결과 決定案이 法規에 적합하고 市民生活에 꼭 필요한 都市計劃施設이라고 判斷되는 議案番號 922番은 1963年 9月 17日 이후부터 서울市 都市計劃區域으로 編入되어 온 京畿道 高陽市, 九里市 등 傘下 行政區域을 분리해 달라는 京畿道知事의 要請에 따라 地方自治의 독립된 都市計劃 區域管理를 위해 區域을 變更코자 하는 事項과, 議案番號 961番 瑞草區 院趾洞 23 一帶 廢棄物施設 決定과 이에 따른 進入道路 決定 및 議案番號 972番 宅地開發事業施行 이전부터 있어온 江東區 高德 第7公園 內의 기존 건물을 公園 外廓으로 대체 指定하여 합리적인 土地利用을 도모코자 하는 公園施設 變更決定 等 總 3件에 대해서는 市長 決定案대로 同意 意見을 제시하였으며, 施設決定案 내용에 대하여 地域的으로 특수성이 있어 現地 確認 等 再審査가 要求되는 議案番號 956番 倉洞 起點 上溪洞 終點 間 道路 幅員 擴張件과, 議案番號 959番 九老區 加里峰洞, 光明市 鐵山洞 일대 水質汚染 防止施設 變更決定 等 2件에 대해서는 다음 會期에 處理토록 審査를 保留하였습니다.

이상 報告드린 대로 意見聽取 案件은 1件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深度 있는 審査를 다 했습니다.

案件別 審査結果는 배포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內容대로 意見聽取의 件이 可決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그러면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意見聽取 3件에 대하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各各 採擇코자 합니다.

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3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총 제출 및 회부 상정건수 : 5건

• 전회기 보류 : 4건

• 금회기 추가(신규) : 1건

(다음 페이지에 계속)

58 (第69回一第2次)

의안번호	회부일자	제출일자	상 정 · 심 사 내 역
922	'93. 12. 3	'93. 12. 9	•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4.2.21)상정, 심사(보류) • 제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4.3.23)상정, 의결
961	'94. 1. 25	'94. 2. 2	•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4.2.21)상정, 심사(보류) • 제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4.3.23)상정, 의결
972	'94. 3. 9	'94. 3. 9	• 제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4.3.23)상정, 의결
956	'94. 1. 25	'94. 2. 2	•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4.2.21)상정, 심사(보류) • 제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4.3.23)상정, 심사(보류)
959	'94. 1. 25	'94. 1. 25	• 제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4.3.23)상정, 심사(보류)

2. 상정일자
제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상정, 의결('94.3.23)

3. 제안이유 및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최재범(도시계획국소관 5건)
가. 제안이유
별첨이유
나. 주요요지
안건별내용 별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안건별 내용 별첨

5. 심사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였는 바,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이익에 관계되는 시설은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처리토록 하고,
○심사 중 결정안에 대한 현지확인이나 재심사가 요구된 사항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보류하였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 청취의건 안건별심사결과

○총 5건 중
• 서울시장의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 3건 (922,961,972)
• 금회기 보류 : 2건(956,959)

의안 번호	922

1. 건　　명 :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상정내용
   • '63.9.17 서울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온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군 일부 행정구역이 시승격등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독립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분리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구역을 변경(분리)코자 함.
   ○변경내용
   •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군 각 일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일부지역
   ○도시계획사항
   • 도시계획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준공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공원, 도로, 학교, 철도, 하수시설, 자동차정류장 등
   ○주민공람결과
   의견없음.
4. 검토의견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의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면적 665,984㎢ 중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고양시, 구리시, 그리고 남양주군 일부 지역 등 59,749㎢를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코자 하는 내용임.
   ○경기도지역의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의 편입은 '63.9.17 이루어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추세에 따라 자체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분리를 요구하여 옴에 따라 구역을 변경코자 한 것임.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특정 도시발전을 위한 광역 지역관리 차원에서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구역을 결정한 것인 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변경으로 인한 서울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시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안 번호	961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치 : 서초구 원지동 23 일대
   ○내용
   • 폐기물시설결정 : A=14,639㎡
   • 진입도로결정 : B=15m, L=110m
   •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 A=359,843.7㎡ →359,315.7㎡ (감 528㎡)
   • 도시계획사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일부)유통업무설비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7건(교통체증 가중 및 주변자연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반대—미반영)
4. 검토의견
   ○서초구 원지동 23 일대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집하장시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여기에 따른 차량진입로를 결정하면서 이 진입도로에 저촉되는 유통업무 설비 일부(528㎡)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임.
   ○본 시설결정은 서초구내에서 수집된 쓰레기를 김포 해안 매립지까지 운반함에 있

어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선별 작업하고 폐기쓰레기는 압축하여 쓰레기 부피를 감소시켜 쓰레기 운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결정에는 동의의견이나, 인근 지역에서 자연환경 저해를 이유로 반대의견 (97건)이 있으므로 현지확인 등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시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안 번호	972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치 : 강동구 고덕동 215 일대
   ○내용
   • 면적 : 99,599.9㎡(기존 공원면적 증감없이 위치만 조정)
   조정면적 : 603.1㎡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공원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
4. 검토의견
   ○이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82.4.29~'85. 12.30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로서
   ○고덕 제7공원내에 있는 교회건물(대양교회 및 부속건물)은 사업시행 이전부터 있어온 기존 건물로서 공원 내부에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기능에 지장이 있고 또한 진입도로가 없어 증·개축이 곤란한 점등 불편요인이 많아
   ○기존 건물을 공원 외곽으로 위치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원지정 활용상 대체지정에 동의 의견임.
5. 심사결과

시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안 번호	956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치:창동(광 17)기점, 상계동(대2-26)종점
   ○내용
   • 규모 : B=35m→B=35~38.5m
   ※창동 135-26~75-3간,
   길이 95m구간 폭원확장
   • 도시계획사항 : 준공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
4. 검토의견
   ○본건은 도봉구 창동 135-26 외 일대 쇼핑센터를 건축함에 따라 건물 전면도로가 차도는 5m, 보도는 3m로 장차 쇼핑센타가 영업을 개시할 시, 이 지역에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건축주의 부담으로 기존전면 도로를 차도는 5m에서 8m로, 보도는 3m에서 3.5m로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 변경내용임.
   ○앞으로 쇼핑센터가 영업을 개시할 시 이용주민이 집중되어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도로 확장 결정에 동의 의견임.
5. 심사결과

보 류

의안 번호	959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535 일대
면적 : 6,483㎡→0
위치 : 광명시 철산동 322 일대
면적 : 7,183㎡→0

○지역현황
• 한국수출산업공단내에 소재하며, 다음 시설로 이용중임.
가리봉동 535일대→녹지대 조성(주차장 및 소공원)
광명시 철산동 322 일대→자동차운전학원
•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연접하여 유수지시설이 설치되어 공단내 우·오수 배제
• 토지소유자 : 한국수출산업공단

4. 검토의견
○본 구로구 가리봉동 535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76.9.24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와 동시에 시설 결정되었으나,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설지역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만들고, 또 자동차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90.4.26 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4조(공단용지의 용도별 구획등)에 의거 공공시설구역(수질오염 방지시설)에서 공장 시설구역으로 구획변경 고시됨에 따라
○현재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임.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법률에 의해서 공장시설구역으로 구획변경되어 수질오염 방지시설 유지는 불요하다 하더라도, 이 공단지역의 하수처리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처리 의견임.

5. 심사결과
보 류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건

의안 번호	922

제출년월일 : 1993.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개 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구역	면적(㎢)	구역	면적(㎢)	
서울도시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고양시·구리시·남양주군 각 일부 지역	665,984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일부 지역	606,235	◀구역분리▶ ○원능 도시계획 구역 53,949㎢ ○구리 도시계획 구역 5.8㎢

2. 상정사유
○'63.9.17 서울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관리되어 온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군 일부 행정구역이 시승격 등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독립된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분리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구역을 변경(분리)코자 함.

3. 참고사항
○도시계획사항 : 도시계획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학교, 철도, 하수시설, 자동차정류장 등
○공람주민 의견청취 결과 : 의견없음.